#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291 제출년월일 : 2024. . .

제 출 자:평창군수

##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 (2024. 3. 29.)으로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에 따라 국(局) 신설을 통한 국장 통솔기능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#### < 주요 개편내용 >

□ 기구 총괄: (본청) 국 +1, (직속기관, 시업소, 읍면) 변동없음

o 신 설 : **도시안전국** ⇒ 3국 체제

o 변 경 : 행정지원국 ➡ **기획재정국**, 경제건설국 ➡ **관광경제국** 

기획실 ⇨ 기획예산과, 행정과 ⇨ 행정담당관

ㅇ 폐 지 : 정책담당관

ㅇ 분 리 : 관광문화과 ⇨ 관광정책과, 문화예술과

구분	총계		본청		직속기관 사		사업	업소		회	읍면			
TE	뱌	부서	담당	뱌	부서	담당	부서	담당	부서	담당	부	담당	부서	담당
기 존	2	36	170	2	19	89	7	32	1	4	1	2	8	43
변 경	3	36	169	3	19	88	7	32	1	4	1	2	8	43
증 감	+1	-	△1	+1	-	△1	-	-	-	-	-	-	-	-

#### □ 기구(본청) 직제 순서 변경

o 행정담당관 부군수 직속

기획예산과 ⇨ 인재육성과 ⇨ 복지정책과 ⇨ 가족복지과 ⇨ 세정과 • 기획재정국(6)

⇒ 회계과

• 관광정책과 ⇨ 문화예술과 ⇨ 올림픽체육과 ⇨ 경제과 ⇨ 민원토

지과

 c
 도시과 ⇒
 허가과 ⇒
 건설과 ⇒
 안전교통과 ⇒
 산림과 ⇒
 환경과

⇒ 현안사업추진과

#### □ 국·실과 단위 개편사항

#### ① 기획예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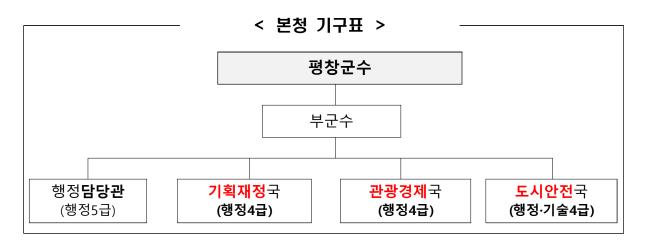
- o 기능 약화(공모사업) 분야 □ 동원육영회 유치·재정기능 통합(재정지원)
- 기획재정국 소속 배치를 통한 전 부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

#### ② 행정담당관

- o 국 중심의 체제 개편에 따른 기능 독립(인사·근평 등 공정성 확보)
- 노사관리(노무관리) + 사회단체(행정) 통합 ➡ **단체협력(노사 + 단체관리)**

#### ③ 국 신설(+1) ⇒ 국장 등솔범위 완화 및 업무 책임성 강화

- o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국 설치 상한 폐지(국 신설 자율화)
- 국 소관부서 감축으로 업무 전문성 및 국·과장 책임 강화



#### ④ 정책담당관(기능쇠퇴 분야 ⇒ 폐지)

- o 민선8기 전반기 총괄 관리조정 및 정책보좌 역할 수행
- 정책담당관 소속 업무 이관(총괄정책팀, 사업발굴팀 □ 기획예산과)
- 정책담당관 소속 부서 이관(인구정책팀 ➡ 기획예산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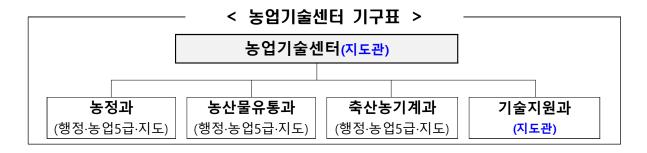
#### ⑤ 관광문화과(부서 분리 ⇒ 관광·문화분야 기능 강화)

- o 관광·문화업무 분리를 통한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력 강화
- 관광기획팀 □ 관광정책팀, 문화재팀 □ 국가유산팀 명칭 변경
   ※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팀 명칭 변경
- o 문화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**문화시설팀 신설**



#### ⑥ 농업기술센터

- ㅇ 행정안전부 기구정원 감사 지적사항 반영
  - □ 농업기술센터 소장·기술지원과장 직위 지도관 단수 책정



# □ 담당 단위 개편사항

## ① 담당 명칭변경

부서명	변경 전	변경 후	주요 내용
기획예산과	공모사업	재정지원	· 공모사업 + 재정업무(예산팀 소관)
행정담당관	노무관리	단체협력	· 사회단체 + 노사관리
올림픽체육과	스포츠마케팅	시설운영	· 시설운영팀 신설 및 마케팅 업무 이관
관광정책과	관광기획	관광정책	· 부서 신설에 따른 명칭 변경
문화예술과	문화재	국가유산	·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
건강증진과	건강증진	평창권역	·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(평창·미탄)

# ② 담당 신설

부서명	담 당	주요 내용
문화예술과	문화시설	· 문화시설 관리 전문성 강화
올림픽체육과	시설운영	· 체육시설 관리·운영
건강증진과	대화권역	·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(방림·대화)
건강증진과	봉평권역	·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(봉평·용평)

<sup>※</sup> 진부권역(건강생활지원센터)

# ③ 담당 폐지

부서명	담 당	주요 내용
정책담당관	총괄정책	· 기획팀 업무 중첩(기능 쇠퇴)
정책담당관	사업발굴	· 공모사업팀 업무 중첩(기능 쇠퇴)
건강증진과	정신건강·치매안심	· 정신·치매 통합 및 이관(의료지원과)
의료지원과	건강검진	· 의료관리팀 통합 운영

# ④ 담당 이관

기능(업무)	현 부서	이관 부서	주요 내용
인구정책	정책담당관	기획예산과	·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
재해예방	건설과	안전교통과	· 사회·자연재난 업무 소관부서 일원화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4. 4. 22. ~ 2024. 5. 12.) 결과, 의견 2건(별첨)

- 평창군 공고 제2024-637호, 행정과-9780(2024. 4. 19.)호

2) 규제심사: 규제사무 없음 [기획실-7855(2024. 5. 20.)호]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실-7855(2024. 5. 20.)호]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17851(2024. 5. 21.)호]

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실-7973(2024. 5. 22.)호]

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실-8095(2024. 5. 24.)호]

####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"실·과장·담당관"을 "담당관·과장"으로 한다.

제3조 중 "행정지원국, 경제건설국"을 "기획재정국, 관광경제국, 도시안 전국"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2항) 중 "기획실"을 "행정담당관"으로 한다.

② 행정담당관은 인사, 조직, 복무, 교육,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 관하여부군수를 보좌한다.

제5조의 제목 "(행정지원국에 두는 과)"를 "(기획재정국에 두는 과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행정지원국에 행정과, 올림픽체육과"를 "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, 인재육성과"로, "민원토지과, 세정과, 회계과, 인재육성과"를 "세정과, 회계과"로 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행정지원국장"을 "기획재정국장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.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조까지를 제6

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(종전의 제12호) 중 "과표 결정 및 공유재산"을 "공유재산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8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호(종전의 제18 호) 중 "인사·조직·올림픽·체육행정·복지·민원·세무·교육"을 "기획·교육·복지·세무·회계"로 한다.

- 2. 기획, 예산, 법무. 감사, 홍보, 인구정책 등에 관한 사항
- 3. 공교육지원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

제6조의 제목 "(경제건설국에 두는 과)"를 "(관광경제국에 두는 과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관광경제국에 관광정책과, 문화예술과, 올림픽체육과, 경제과, 민원 토지과를 둔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경제건설국"을 "관광경제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, 제3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, 제6호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 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7호를 제21호로 하며, 같은 호(종전의 제27호) 중 "문화관광·인 허가·경제·일자리·환경·산림·안전·재난방재·건설행정·도시개 발·경관"을 "관광·문화·올림픽유산·체육·경제·민원"으로 한다.

- 7. 올림픽 유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
- 8. 국제행사, 특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
- 9. 체육 정책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

- 10.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
- 11.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- 12.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- 13.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14.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15.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16. 물가안정, 소비자보호, 공장설립,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
- 17. 기업유치,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
- 18. 전기·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
- 19. 민원, 주민등록, 지적, 토지관리, 새주소에 관한 사항
- 20.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6조의2(도시안전국에 두는 과) ① 도시안전국에 도시과, 허가과, 건설과, 안전교통과, 산림과, 환경과, 현안사업추진과를 둔다.
  - ② 도시안전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 - 2. 도시기본계획수립,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- 3. 도시개발, 도시재생, 경관조성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  - 4. 인ㆍ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
  - 5. 건축・농지・산지민원에 관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  - 6. 도로, 교량, 농업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- 7.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8. 안전관리,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· 풍수해 등에 관한 사항
- 9. 교통, 운수,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
- 10.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
- 11. 자연휴양림,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
- 12. 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13. 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
- 14.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및 수집 · 운반에 관한 사항
- 15. 그 밖의 도시개발·경관·인허가·건설행정·안전·재난방재·산 림·환경에 관한 사항

제10조제1항 중 "농촌지도사업·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도록 군에"를 "군에"로 한다.

제1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농산물유통"을 "농산물유통과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축산농기계"를 "축산농기계과"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"같은 법 시행령 제78조"를 "같은 법 시행령 제76조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①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"행정지원국장"을 각각 "기획재 정장"으로 한다.

②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"행정지원국장"을 각각 "기획재정국장"으로 한다.

- ③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제1호 중 "행정지원국장"을 "기획재정국장"으로 한다.
- ④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3항제1호 중 "행정지원국장, 경제건설국장, 기획실장"을 "기획 재정국장, 관광경제국장, 도시안전국장, 기획예산과장"으로 한다.
- ⑤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3항 중 "경제건설국장, 기획실장"을 "도시안전국장, 기획예산 과장"으로 한다.
- ⑥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"경제건설국장"을 "도시안전국장"으로 한다.

⑦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2항 중 "경제건설국장"을 "관광경제국장"으로 한다.

- ⑧ 평창군 문화예술·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3조제2항 중"경제건설국장"을 "관광경제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제3항 중 "관광문화과장"을 "문화예술과장"으로 한다.
- ⑨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2항제2호 중 "경제건설국장, 관광문화과장"을 "관광경제국장, 문화예술과장"으로 한다.
- ①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2조제2항 중 "실·과장, 담당관"을 "국장, 담당관·과장"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"실·과·소장, 담당관"을 "국장, 담당관·과·소장"으로 한다.
- ①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"실·과장, 담당관"을 "담당관·과장"으로 한다.
- ②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8조제2항 중 "실과장"을 "부서장"으로, "실·과·소장, 담당관"을 "담당관·과·소장"으로 하며, 제11조제2항 중 "실·과·소·직속기관·사업소장"을 "부서장"으로 한다.
- ③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2항 중 "실·과·소·단장"을 "국·담당관·과·소장"으로 한다.

- ④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3항 중 "실·과·단장"을 "부서장"으로 한다.
- ⑤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항 중 "기획실장"을 "기획예산과장"으로 한다.
- (b) 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3항 중 "기획실장"을 "기획예산과장"으로 한다.
- ①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호 중 "기획실장, 관광문화과장"을 "기획예산과장, 관광정책과장"으로 한다.
- (B)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3호 중 "기획실장"을 "기획예산과장"으로 한다.
- ①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3조제3항 중 "기획실장"을 "기획예산과장"으로 한다.
- ②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4조제3항 중 "기획실장"을 "기획예산과장"으로 한다.
- ②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5조제3항제1호 중 "<mark>농산물유통과장</mark>, 기획실장"을 "농정과장, 기획예산과장"으로 한다.

② 평창군 브랜드·상징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3항제1호 중 "기획실"을 "기획예산과"로, 같은 항 제2호 중

"행정과"를 "행정담당관"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 중 "기획실장, 행정과장, 관광문화과장"을 "기획예산과장, 행정담당관, 관광정책과장"으로 한다.

②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 중 "기획실장"을 "기획예산과장"으로 한다.

- ②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3항 중 "기획실장"을 "기획예산과장"으로 한다.
- ②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3항 중 "기획실장"을 "기획예산과장"으로 한다.
- 26 평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3항 중 "기획실장"을 "기획예산과장"으로 한다.
- ②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3항제1호 중 "기획실장"을 "기획예산과장"으로 하고, "행정과 장"을 "행정담당관"으로 한다.
- ②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"기획실장"을 "기획예산과장"으로 한다.

②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

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"기획실장"을 "기획예산과장"으로 한다.

③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1호 중 "기획실장, 관광문화과장"을 "기획예산과장, 관광정책과장"으로 한다.

③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6항 중 "기획실장, 관광문화과장"을 "기획예산과장, 관광정책과장"으로 한다.

② 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"기획실장"을 "기획예산과장"으로 한다.

③ 평창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, 제7조제1항 및 제2항, 제8조, 제10조제1항 및 제2항,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"행정과장"을 "행정담당관"으로 한다.

③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중 "행정과장, 관광문화과장"을 "행정담당관, 관광정책과장"으로 한다.

③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"민원토지과장, 관광문화과장"을 "기술지원과장, 관광정

책과장"으로 한다.

- ③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3항 중 "관광문화과장"을 "문화예술과장"으로 한다.
- ③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3항 중 "관광문화과장"을 "문화예술과장"으로 한다.
- ③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3항 중 "관광문화과장"을 "관광정책과장"으로 한다.
- ③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2항 중 "관광문화과장"을 "관광정책과장"으로 한다.
- ④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4항 중 "관광문화과장"을 "관광정책과장"으로 한다.
- ④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 중 "관광문화과장"을 "문화예술과장"으로 한다.

- ② 평창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호 중 "기획담당관"을 각각 "기획예산과장"으로 한다.
- ④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1호 중 "자치행정과장"을 "행정담당관"으로 한다.

⑭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"자치행정과장"을 "업무 부서장"으로 한다

- ④ 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3항제1호 중 "경제체육과장"을 "경제과장"으로 한다.
- 46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중 "주민복지과장"을 "복지정책과장"으로 한다.

①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중 "주민생활지원과장"을 "의료지원과장"으로 한다.

❸ 평창군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7조제3항중 "주민생활지원과장"을 "가족복지과장"으로 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보조・보좌기관의 직급 등)	제2조(보조・보좌기관의 직급 등)
① 평창군(이하"군"이라 한다)	①
본청의 국장, <u>실·과장·담당</u>	<u>담당관·과장</u>
관, 직속기관의 장 및 읍·면장	
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	
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조(국의 설치) 군의 행정사무	제3조(국의 설치)
를 분장하기 위하여 <u>행정지원</u>	<u>기획재정국,</u>
<u>국, 경제건설국</u> 을 둔다.	관광경제국, 도시안전국
제4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	제4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
・보좌기관의 설치) ① 군수 밑	·보좌기관의 설치) <u>&lt;삭 제&gt;</u>
에 정책담당관을 둔다.	
<u> &lt;신 설&gt;</u>	② 행정담당관은 인사, 조직, 복
	무, 교육,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
	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.
② 부군수 밑에 <u>기획실</u> 을 둔다.	<u>① 행정담당관</u>
제5조(행정지원국에 두는 과) ①	제5조(기획재정국에 두는 과) ①
행정지원국에 행정과, 올림픽체	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, 인재
<u>육과</u> , 복지정책과, 가족복지과,	<u>육성과</u>
민원토지과, 세정과, 회계과, 인	<u>세정과, 회계과</u>
<u>재육성과</u> 를 둔다.	
② 행정지원국장의 분장사무는	② 기획재정국장

현 행	개 정 안
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ol> <li>인사, 조직, 복무, 교육, 후생</li> </ol>	2. 기획, 예산, 법무, 감사, 홍보,
복지에 관한 사항	인구정책 등에 관한 사항
3. 올림픽 유산 및 기념사업에	3. 공교육지원 및 평생학습에
관한 사항	관한 사항
4. 국제행사, 특구 지정 및 개발	<u>&lt;삭 제&gt;</u>
에 관한 사항	
<u>5</u> .· <u>6</u> . (생 략)	<u>4.·5.</u> (현행 제5호 및 제6호와
	같음)
7. 민원, 주민등록, 지적, 토지관	<u>&lt;삭 제&gt;</u>
리, 새주소에 관한 사항	
8.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	<u>&lt;삭 제&gt;</u>
시행에 관한 사항	
<u>9</u> . ~ <u>11</u> . (생 략)	<u>6.</u> ∼ <u>8.</u> (현행 제9호부터 제11
	호까지와 같음)
<u>12</u> . <u>과표 결정 및 공유재산</u> , 공	<u>9.</u> 공유재산
공청사,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	
사항	
13. 체육 정책 수립 및 진흥에	<u>&lt;삭 제&gt;</u>
관한 사항	
14.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	<u>&lt;</u> 삭 제>
15.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	<u>&lt;</u> 삭 제>
<u>항</u>	
16. 공교육지원 및 평생학습에	<u>&lt;삭 제&gt;</u>

혅 햀

관한 사항

17.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| 18. 그 밖의 인사·조직·올림 10. ----- 기획·교육·복지 픽·체육행정·복지·민원· 세무・교육에 관한 사항

제6조(경제건설국에 두는 과) ① 제6조(관광경제국에 두는 과) ① 전교통과, 건설과, 도시과, 현안 사업추진과를 둔다.

- ② 경제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다 음 각 호와 같다.
- 1. (생략)
- 2. · 3. (생략)

4. ~ 6. (생략)

- 7.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 에 관한 사항
- 8.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9.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사항
- 10. 물가안정, 소비자보호 공장 설립,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

개 정 안

<삭 제>

·세무·회계-----

경제건설국에 관광문화과, 허가 | 관광경제국에 관광정책과, 문화 과, 경제과, 환경과, 산림과, 안 예술과, 올림픽체육과, 경제과, 민원토지과를 둔다.

- ② 관광경제국----
- 1. (현행과 같음)
- 5. · 6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- 2. ~ 4. (현행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)
- 7. 올림픽 유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
- 8. 국제행사, 특구 지정 및 개발 에 관한 사항
- 9. 체육 정책 수립 및 진흥에 관 한 사항
- 10.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

- 11. 기업유치,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
- 12. 전기·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 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
- 13. 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

  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14. <u>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</u>에 관 한 사항
- 15.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및 수

   집・운반에 관한 사항
- 16.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

   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
- 17. <u>자연휴양림, 수목원 조성 및</u>운영에 관한 사항
- 18.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,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
- 19. 도시기본계획수립, 도시관

   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

   사항
- 20. 도시개발, 도시재생, 경관조

   성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

   관한 사항
- 21. 안전관리, 사회재난 및 교 통, 운수, 차량등록에 관한 사 항

개 정 안

- 11.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 항
- 12.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에 관한 사항
- 13.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 에 관한 사항
- 14.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15.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

   원에 관한 사항
- 16. 물가안정, 소비자보호, 공장 설립,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17. 기업유치,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
- 18. <u>전기·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</u> 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
- <u>19. 민원, 주민등록, 지적, 토지</u> <u>관리, 새주소에 관한 사항</u>
- 20.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

   시행에 관한 사항

<u><삭 제></u>

현 행	개 정 안
22. 도로, 교량, 농업기반시설	<u>&lt;삭 제&gt;</u>
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	
<u>ত্ট</u>	
23. 자연재해・풍수해 관련 재	<u>&lt;삭 제&gt;</u>
난관리,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	
24.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	<u>&lt;삭 제&gt;</u>
<u>사항</u>	
25.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	<u>&lt;삭 제&gt;</u>
발행위에 관한 사항	
26. 건축・농지・산지민원에 관	<u>&lt;삭 제&gt;</u>
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	
<u>사항</u>	
<u>27</u> . 그 밖의 <u>문화관광·인허가</u>	<u>21</u> <u>관광·문화·올림픽</u>
<u>•경제 • 일자리 • 환경 • 산림</u>	유산·체육·경제·민원
<u>•안전•재난방재•건설행정</u>	
<u>•도시개발•경관</u> 에 관한 사	
ठॅरे-	
<u>&lt;신 설&gt;</u>	제6조의2(도시안전국에 두는 과)
	① 도시안전국에 도시과, 허가
	과, 건설과, 안전교통과, 산림과,
	환경과, 현안사업추진과를 둔
	<u>다.</u>
	② 도시안전국의 분장사무는 다
	<u>음 각 호와 같다.</u>
	1.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

현 행	개 정 안
	조정에 관한 사항
	2. 도시기본계획수립, 도시관리
	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
	<u>항</u>
	3. 도시개발, 도시재생, 경관조
	성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
	<u>관한 사항</u>
	4. 인ㆍ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
	개발행위에 관한 사항
	5. 건축・농지・산지민원에 관
	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
	<u>사항</u>
	6. 도로, 교량, 농업기반시설 등
	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	7.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
	<u>사항</u>
	8. 안전관리, 사회재난 및 자연
	재해·풍수해 등에 관한 사항
	<u>9. 교통, 운수, 차량등록에 관한</u>
	사항
	10.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
	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
	<u>11. 자연휴양림, 도시공원 및 녹</u>
	지조성에 관한 사항
	12. 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

혅 행 개 정 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. 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에 관 한 사항 14.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및 수 집 · 운반에 관한 사항 15. 그 밖의 도시개발·경관· 인허가 · 건설행정 · 안전 · 재 난방재・산림・환경에 관한 사항 제10조(설치) ①-----제10조(설치) ①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 ----- 군에 ----사업・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도록 군에 농업기술센터 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한 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의 제12조(소관사무) ----사무를 관장한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농산물유통과 2. 농산물유통 가. ~ 바. (생 략) 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 3. 축산농기계 3. 축산농기계과 가. ~ 마. (생 략)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4. (생략) 4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설치) ① 법 제128조 및 <u>같</u>	제20조(설치) ① <u>같</u>
<u>은 법 시행령 제78조</u> 에 따라 원	<u>은 법 시행령 제76조</u>
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	
기 위하여 방림면계촌출장소(이	
하 "출장소"라 한다)를 설치한	
다.	<b>.</b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# 관계법령 발췌

#### □ 지방자치법

-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③~⑥ (생략)

## 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- 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·군·구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한다.
  -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<u>규칙</u>으로 정한다.
  - ③ (생략)
  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# 입법예고 결과

# ○ 제출의견

제출기관(부서)	주요내용	비고
	· 행정담당관 🖒 부군수 직속 개편(찬성)	
평창군의회	· 관광정책과, 문화예술과 <b>분과(찬성)</b>	
(사전설명)	· 인구정책팀 ⇨ <b>기획예산과 이관</b>	
	· 도서관팀 ⇨ <b>문화예술과 부적합</b>	
	· 인재육성과 🖒 <b>기획재정국 소속</b> 변경 건의	
인재육성과	· 인구정책팀 ⇨ <b>인재육성과 소속 부적합</b>	
	· 도서관팀 ⇨ 인재육성과 존치( <b>문화예술과 이관 반대</b> )	

# ○ 검토결과

제출기관(부서)	검토결과	결과
	· 행정담당관(행정과) 🖒 부군수 직속 개편(찬성)	반영
_	· 관광정책과, 문화예술과 <b>분과(찬성)</b>	반영
평창군의회 (사전설명)	· 인재육성과 소속 인구정책팀을 <b>기획예산과 소속</b> <b>으로 변경</b>	반영
	· 도서관팀 문화예술과 ⇨ 인재육성과 소속 변경 · 문화예술과 3팀(문화예술, 국가유산, 문화시설) 운영	반영
인재육성과	<ul> <li>관광경제국 소속 인재육성과 기획재정국 소속 변경</li> <li>▶ 인재육성과 청소년교육팀 업무가 복지정책과, 가족 복지과 업무협의 잦은 상황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소속 국 변경</li> </ul>	반영
	· 인재육성과 소속 <b>인구정책팀 기획예산과 소속 변경</b>	반영
	· 도서관팀 문화예술과 🖒 인재육성과 소속 변경 · 문화예술과 3팀(문화예술, 국가유산, 문화시설) 운영	반영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제1호

##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

#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이영배
연락처	(033) 330 - 2210